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4871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3. E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F

4. G

5. H

6. I

7. J

**변론 종결**2020. 4. 9.

**판결 선고**2020. 5. 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57,461,913원을,

나. 피고 G, H, I, J은 피고 C, D,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6,760,225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59,502,713원을, 나. 피고 G, H, I, J은 피고 C, D,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7,000,319원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해 1991. 5. 15. 원고(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1991. 5. 20.~1996. 10. 21.까지로 정하여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이 소외 회사에 대한 리스료 납입을 연체할 경우 소외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 C은 즉시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한,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위 이율의 변동시에는 변동된 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D, 피고 E, 소외 M, 소외 N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C이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소외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3. 2. 19. 소외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이 1995. 11. 17.까지 원고에게 5,821,427원을 변제하고, 위 돈이 원금에 환입됨으로써 보험금 원금은 74,178,573원(= 8,000만 원 - 5,821,427원)이 남게 되었고, 1993. 2. 20.부터 1995. 11.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6,534,190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연대보증인 중 위 M가 1991. 5. 23., 위 N가 1993. 1. 20. 각 사망하였고, 이에 위 M의 연대보증채무는 그의 처인 소외 O에게 3/9 지분, 그의 자녀들인 소외 P, 소외 Q, 소외 R에게 각 2/9

지분으로, 위 N의 연대보증채무는 그의 처인 소외 S에게 3/17 지분, 그의 자녀들인 피고 G, 소외 T, 피고 H, 소외 U, 피고 I, 소외 V, 피고 J에게 각 2/17 지분으로 각 상속되었다.

마.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단1733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1. 6.

다음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당시 피고들 중 위 N의 상속인들인 위 S, G, T, H, U, I, V, J이 항소하였으나, 2000. 3.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C, 같은 E, 같은 D은 연대하여 금 110,712,763원 및 그 중 금 74,178,573원에 대하여 199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나. 피고 O은 같은 C, 같은 E, 같은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 110,712,763원 중 금 36,904,254원 및 그 중 금 24,726,191원에 대하여 199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다. 피고 P, 같은 Q, 같은 R은 같은 C, 같은 E, 같은 D과 연대하여 위 금 110,712,763원 중 금 24,602,836원 및 그 중 금 16,484,127원에 대하여 199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라. 피고 S은 같은 C, 같은 E, 같은 D과 연대하여 위 금 110,712,763원 중 금 19,537,546원 및 그 중 금 13,090,336원에 대하여 199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바. 피고 G, 같은 T, 같은 H, 같은 U, 같은 I, 같은 V, 같은 J은 같은 C, 같은 E, 같은 D과 연대하여 위 금 110,712,763원 중 금 13,025,030원 및 그 중 8,726,890원에 대하여 199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바. 이후 위 M의 상속인들과 위 S이 보험금 원금 잔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 지연손해금만 70,826,699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단17333 사건의 피고들 중 위 M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997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1. 다음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금 70,826,699원을,

나. (1) 피고 S은 피고 C, D, E과 연대하여 위 항 기재 금원 중 12,498,829원을,

(2) 피고 G, T, H, U, I, V, J은 피고 C, D,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금 8,332,552원을 각 지급하라.

사. 이후 위 U, V이 위 지연손해금 중 11,323,986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9977 사건의 피고들 중 위 U,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소송 중 위 T이 위 지연손해금 중 2,040,8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T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57,461,913원(= 70,826,699원 - 11,323,986원 - 2,040,800원)을, 피고 G, H, I, J은 피고 C, D, E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6,760,225원(= 57,461,913원 × 2/17,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단17333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위 O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2)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9977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위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의 주장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9977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9977 사건의 판결문 중 별지 청구원인 제4항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단17333 구상금 청구사건의 소제기로 동 사건은 2000. 3. 8. 판결 선고되고 같은 해 5. 7. 확정되었으나, 그 동안 집행목적물이 전무하여 집행 불능으로 위 판결정본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되므로"라고 기재된 부분은 마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단17333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위 피고들의 오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청구원인 제3항에서 당시까지 변제된 금액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